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23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정일영·허성무·김 윤

박지혜 • 유동수 • 김교흥

김문수・맹성규・노종면

이훈기 • 허종식 • 정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 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을 "8"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전문 법원·지방법원"으로 한다.

3의2. 해사전문법원

제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전문법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전문법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전문법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전문법원·지방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을 "고등법원의사무국장,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해사전문법원의사무국장 및"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허법원의"를 각각 "특허법원·해사전문법원의"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건"을 "사건 및 제28조의7제1항제

3호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제3편에 제2장의2(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해사전문법원

- 제28조의5(해사전문법원장) ① 해사전문법원에 해사전문법원장을 둔다.
 - ② 해사전문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해사전문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의6(부) ① 해사전문법원에 부를 둔다.
 - ②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8조의7(심판권) ① 해사전문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해상보험) 및 제5편(해상)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 한다)
 - 나.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항해, 선박채권 또는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 가. 해사항고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이하 "해사행정청"이라 하며, 해사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나. 해사당사자소송: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② 해사전문법원의 항소부는 해사전문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③ 해사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은 "해사전문법원"으로 본다.

제28조의8(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제28조의7에 규정된 해사

사건과 관련되는 소송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않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해사전문법원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되어 온 경 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차장"을 "해사전문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음의 <u>7</u> 종류로 한다.	<u>8</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해사전문법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u>지방</u>	③ <u>해사전</u>
<u>법원</u> ·가정법원·행정법원·회	<u>문법원·지방법원</u>
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	
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	
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	
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	
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판사) ① (생 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법원·특허법원· <u>지방</u>	② <u>해사전</u>
<u>법원</u> ·가정법원·행정법원 및	<u>문법원·지방법원</u>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제6조(직무대리) ①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 특허법원 · <u>지방법원</u> · 가정법	<u>해사전문법원·지방법</u>
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u>원</u>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② (생 략)
 -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⑤ (생 략)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u>지방법원</u>・가정법
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생략)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특허법원·<u>지방</u>
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

<u>.</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u> 특허법원·해사전
<u>문법원</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판사회의) ①
<u>해사전문법원·지방</u>
<u>법원</u>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해사정무
① <u>해사전문</u> 법원·지방법원
① <u>해사전문</u> <u>법원·지방법원</u>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 (局)을 둘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 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 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 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 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 (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 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 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 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 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 사관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지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의 사무국장, 특허
법원의 사무국장, 해사전문법원
<u>의 사무국장 및</u>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심판권)
•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u>특</u>
 <u>허법원의</u> 판결에 대한 상고사 건
-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 소법원·<u>특허법원의</u> 결정·명 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생략)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 기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 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u>사건</u>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1특
— 허법원·해사전문법원의
2
<u>특허법원·해사전문법</u>
<u>원의</u>
3. (현행과 같음)
제28조(심판권)
사건 및 제 <u>28</u>
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사
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
<u>건</u>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해사전문법원
제28조의5(해사전문법원장) ① 해
사전문법원에 해사전문법원장
<u>을 둔다.</u>
② 해사전문법원장은 판사로
<u>보한다.</u>
③ 해사전문법원장은 그 법원
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신 설>

<신 설>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의6(부) ① 해사전문법원에 부를 둔다.
 - ②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8조의7(심판권) ① 해사전문법 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 한다.
 -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

 절(해상보험) 및 제5편(해

 상)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

 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

 한다)
 - <u>나. 「선원법」의 규정이 적</u> 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 건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항해, 선박채권 또는 그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로 정하는 사건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가. 해사항고소송: 해양수산 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이하 "해사행정청"이라 하며, 해사행정청에는 법 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 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 다)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

나. 해사당사자소송: 해사행 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

<신 설>

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전문법원의 항소부는 해사전문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③ 해사행정소송은 「행정소송 법」을 준용하되, 「행정소송 법」상 "행정법원"은 "해사전 문법원"으로 본다.

제28조의8(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제28조의7에 규정 된 해사사건과 관련되는 소송 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않 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 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 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제44조(보직) ① (생 략)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u>법원행정처차장</u>,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 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 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수 있고, 해사전문법원은 다른	<u>=</u>
법원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되어 온 경우 이를 병합청	<u>;}</u>
여 심리할 수 있다.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_
<u>해사전문법원징</u>	١,
법원행정처차장	_
	_
	_
	_